

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

※ 적용시기 : 2024. 1.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규모 (추정가액)	[일반관리비]		[이윤] (노+경+일) x 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노) x 율		(재+노) x 율			(재+노+경) x 율			(직접공사비) x 율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재+직노) x 율 + 기초액											
		토목	조경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전문 공사		중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7	13.7	13.7	6.5	6.4	6.5	5억 - 30억 미만	6.0	15.0	구분	요율	구분	요율	5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3.8	13.8	13.8	6.7	6.6	6.7													토목공사(토건)	0.40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13~36개월 (1095일)	13.7	13.8	13.7	6.8	6.7	6.8																	산업·설비공사	0.16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51
	36개월 초과 (1096일)	13.9	14.0	13.9	7.1	7.0	7.1																				
6개월 이하 (183일)	13.3	13.3	13.3	6.8	6.7	6.8	50억 ~ 500억 미만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7~12개월 (365일)	13.4	13.4	13.4	7.0	6.9	7.0				30억 - 50억 미만	5.0	10.0	그 외	0.10													
13~36개월 (1095일)	13.3	13.4	13.3	7.1	7.0	7.1										100억 미만	5.5	12.0									
36개월 초과 (1096일)	13.5	13.6	13.5	7.4	7.3	7.4													300억 - 1000억 미만	5.0	4.5	9.0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7.1	7.0	7.1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7.3	7.2	7.3					100억 - 300억 미만	5.5	12.0														
13~36개월 (1095일)	13.2	13.2	13.2	7.3	7.3	7.3								300억 - 1000억 미만		5.0	4.5	9.0									
36개월 초과 (1096일)	13.4	13.4	13.4	7.7	7.6	7.7													1000억 이상	4.5	9.0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6.3	6.2	6.3	1000억 이상	4.5	9.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6.5	6.4	6.5					1000억 이상	4.5	9.0														
13~36개월 (1095일)	13.2	13.3	13.2	6.6	6.5	6.6								1000억 이상	4.5	9.0											
36개월 초과 (1096일)	13.4	13.4	13.4	6.9	6.9	6.9											1000억 이상	4.5	9.0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산재보험료]		(노) x 3.56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x 율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3-620호(2023.12.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의 종류		요율		공사규모(추정가액)		요율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1등급] 1400억 이상		1.57		도로(예: 교량,터널,활주로 등)		0.9		50억 미만		0.081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30		폴렌트(예: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0.4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1.13		지하철		0.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06		철도		1.5		300억 이상 중·중·중·중(토목 및 산업설비)		0.071		* 건설업의 분류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3		상하수도(예: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0.5		300억 이상 중·중·중·중(건축)		0.068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1.02		항만		0.8		터키·대안공사		0.084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7등급] 70억 미만		1.01		(오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공사)		(1.8)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중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12.22)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건강보험료]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0.8		500억 이상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석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95		조경		0.3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70억 이상 - 120억 미만		- [중간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재방(담) 등 신설공사,															
[연금보험료]		(직노) x 4.5		건축		0.7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퇴직급여부금비]		(직노) x 2.3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3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추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추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주택(신축)		0.3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500억 이상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그 밖의 건축공사		0.5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 환경관리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입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5.)															
								- (시행령 제9장) 기술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																			